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4,108,967	12,423,269
일반회계	385,118,722	11,553,562
특별회계	28,990,245	869,707
기타특별회계	28,990,245	869,7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90,219	266,70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18,417	21,553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9,548	3,58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990,785	149,72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937,600	118,12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71,000	38,13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8,362,676	250,8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29,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